

『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과 국가 평생학습체제에 맞춘 장애인·소외계층 평생학습 추진,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의 영역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(안 제3조, 안 제5조)
-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시장의 임무 규정(안 제4조)
- 구미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 대상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(안 제8조)
-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마을단위 역할 강화를 위한 하부조직 설치 근거 신설(안 제2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영역 구체화, 통일성을 위한 조문 정비,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원활한 평생학습을 사업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연간 운영계획과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·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사업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·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확충, 차별 해소 및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하부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 단위 지도자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